

기술표준원공고 제2011 - 49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주성분 및 첨가물 표시 확대 등
- 물휴지(물티슈)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 개정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7 「생활화학가정용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정안
제1부 세정제 (Organic surface-active agent)	제1부 세정제 (Organic surface-active agent)
4. 안전요건 4.1~4.3 <생략> 4.4 용기의 강도 5.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안전요건 4.1~4.3 <생략> 4.4 용기 모양 및 강도 5.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하이포(차아)염소산염을 포함하는 제품(예: 락스류)의 경우 용기 토출부에 제품을 따를 때 용액이 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1~7.1.12 <생략> 7.1.13 표시사항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생략> 2) 인산염 사용량 표시 <생략> 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이하 생략> <신설>	7. 표시사항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7.1.12 <현행과 같음> 7.1.13 표시사항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현행과 같음> 2) 인산염 사용량 표시 <현행과 같음> 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을 표시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4) “KC마크는 이 제품이 세정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2부 방향제 (Room Perfumery)	제2부 방향제 (Room Perfumery)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7.1.11 <생략>	7.1.1~7.1.11 <현행과 같음>
<신설>	7.1.12 표시사항
	1) <u>첨가물의 표시</u> 아래 재료들이 <u>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 의 기능을 표시한다.</u>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2) “KC마크는 이 제품이 방향제 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3부 접착제 (Adhesives)	제3부 접착제 (Adhesives)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7.1.11 <생략>	7.1.1~7.1.11 <현행과 같음>
<신설>	7.1.12 표시사항
	<p>1) <u>첨가물의 표시</u> 아래 재료들이 <u>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u>의 기능을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p>(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p>2) “KC마크는 이 제품이 접착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제4부 광택제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	제4부 광택제 (Artificial waxes and prepared waxes)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7.1.11 <생략>	7.1.1~7.1.11 <현행과 같음>
<신설>	7.1.12 표시사항
	1) <u>첨가물의 표시</u>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을 표시한다.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2) “KC마크는 이 제품이 광택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5부 탈취제 (Deodorizing agent)	제5부 탈취제 (Deodorizing agent)
7. 표시사항	7. 표시사항
7.1 표 시 <생략>	7.1 표 시 <현행과 같음>
7.1.1~7.1.11 <생략>	7.1.1~7.1.11 <현행과 같음>
<신설>	7.1.12 표시사항
	<p>1) <u>첨가물의 표시</u>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을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p>(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p>2) “KC마크는 이 제품이 탈취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제6부 합성세제 (Synthetic detergents)	제6부 합성세제 (Synthetic detergents)
<p>7. 표 시</p> <p>7.1~7.8 <생략></p> <p><신설></p> <p>7.9 표시사항</p> <p>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생략></p> <p>2) 인산염 사용량 표시 <생략></p> <p>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이하 생략></p> <p><신설></p>	<p>7. 표 시</p> <p>7.1~7.8 <생략></p> <p>7.9 독성 (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며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7.10 표시사항 <현행과 같음></p> <p>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현행과 같음></p> <p>2) 인산염 사용량 표시 <현행과 같음></p> <p>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을 표시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4) “KC마크는 이 제품이 합성세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제7부 표백제 (Bleaching agent)	제7부 표백제 (Bleaching agent)
<p>7. 표 시</p> <p>7.1~7.9 <생략></p> <p><신설></p>	<p>7. 표 시</p> <p>7.1~7.9 <생략></p> <p>7.10 독성 (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며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p>7.11 표시사항</p> <p>(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계면활성제에 대하여는 표 2를 참고하여 계면활성제의 계별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계면활성제의 총 합량에 대해 중량 백분율로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음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쇄 알킬 벤젠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음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파 올레핀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말 파라핀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비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 알코올계(비이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킬 페놀계</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미노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베타인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민 옥시드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이온계 계면활성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4급 암모늄염계</td> </tr> </tbody> </table> <p>(표시 예)</p> <p><계면활성제 표시></p> <p>지방산계(음이온), 직쇄알킬벤젠계(음이온), 알파올레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아민 옥사이드계, 고급알코올계(비이온) 등</p> <p><계면활성제 총 합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 미만 - 5 % 이상 ~ 15 % 미만 - 15 % 이상 ~ 30 % 미만 - 30 % 이상 <p>2) 인산염 사용량 표시 (인산염에 대하여는 인산염의 용어를 이용해 표시하고 괄호쓰기로 오산화인 (P₂O₅)으로서의 합량을 표시한다.)</p> <p>3)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 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을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계 표백제 - 염소계 표백제 - EDTA 및 그 염 - NTA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아민 옥시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계면활성제의 구분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나타내는 용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아민 옥시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현 행	개정안
<p>7.10 사용상의 주의사항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놀 및 할로겐화 페놀 - 파라다이클로로벤젠 - 방향족 탄화수소 - 지방족 탄화수소 - 할로겐화 탄화수소 - 비누 - 제올라이트 - 폴리카르복실레이트 <p>(아래 재료는 농도와 관계없이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소 - 살균제 - 형광증백제 - 향료 - 방부제 <p>4) “KC마크는 이 제품이 표백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p>7.12 사용상의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8부 섬유유연제 (Fabric Softening agent)</p> <p>7. 표시 7.1~7.10 <생략> <신설></p> <p>7.11 사용상 주의사항 <생략> 7.12 표시사항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생략> 2) 인산염 사용량 표시 <생략> 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p>	<p style="text-align: center;">제8부 섬유유연제 (Fabric Softening agent)</p> <p>7. 표시 7.1~7.10 <생략> 7.11 독성 (독성이 있는 것에 한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에 비교하며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7.12 사용상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 7.13 표시사항 <현행과 같음> 1) 계면활성제 사용량에 따른 중량 백분율 표시 <현행과 같음> 2) 인산염 사용량 표시 <현행과 같음> 3) 첨가물의 표시 계면활성제 및 인산염 이외의 세정보조제 및 그 외의 첨가제에 대하여는 아래</p>

현 행	개정안
<p>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이하 생략> <신설></p>	<p>재료들이 중량 기준으로 0.2 % 를 초과하는 농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분의 기능을 표시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4) “KC마크는 이 제품이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용도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p>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별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1. 20(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8(우 427-723)

○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